

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0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7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인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제정안의 입법체계와 형식 등에 맞지 않는 부분과 인용법규의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청년의 범위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의4에 따름(안 제2조).
- 나. 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 등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함(안 제9조 제1항).
- 다.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대상은 청년창업자로 서울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으로 규정함(안 제11조).

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 “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의4,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의4”로 한다.

안 제5조 중 “청년 창업자”를 “청년 창업자(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 “오디션”을 “경진대회”로 한다.

안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며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)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,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,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.

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창업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
2.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
3. 제품 홍보·마케팅 지원

4.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
 5.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
 6.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
 7.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2.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3.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 4.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조명을 “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”에서 “창업지원센터”로 한다.

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조명을 “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”에서 “창업지원센터”로 하며 제1항의 “청년창업 예정자인 서울시민으로”를 “청년 창업자로 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”로 한다.

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.

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“청년 창업자에 대하여”를 “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의 범위는 「 <u>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</u> 」 제2조 및 「 <u>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</u> 」 제5조의4, 그 밖의 <u>관계 법령의 규정</u> 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의 범위는 「 <u>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</u> 」 제5조의4에 따른다.
제5조(청년창업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<u>청년 창업자</u> 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<u>오디션</u>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5조(청년창업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<u>청년 창업자(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)</u> 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<u>경진대회</u>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(제정안과 같음)
제5조의2(청년창업 <u>오디션</u> 개최)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<u>청년 창업자(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)</u> 를 선발하는 <u>오디션을</u>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<u>오디션</u> 의 참가 자격,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,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6조(청년창업 <u>경진대회</u> 개최)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<u>청년 창업자</u> 를 선발하는 <u>경진대회를</u>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<u>경진대회</u> 의 참가 자격,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,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제6조 ~ 제7조 (생략)	제7조 ~ 제8조 (제정안과 같음)
제8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	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

<p>하여 <u>청년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창업지원센터”라 한다)</u>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다음 각 호</u>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</u>」를 준용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위하여 <u>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창업지원센터”라 한다)</u>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</u> 2. <u>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</u> 3. <u>제품 홍보·마케팅 지원</u> 4. <u>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</u> 5. <u>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</u> 6. <u>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</u> 7. <u>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</u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를 준용한다.</p> <p>⑤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)</u> (생략)</p>	<p><u>제10조(창업지원센터 운영)</u> (제정안)</p>

략)	과 같음)
제10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)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<u>청년창업 예</u> 정자인 <u>서울시민으로</u> 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11조(창업지원센터 입주) ① 창업 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<u>청년 창업자로 시</u> 에 <u>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</u> 한다. 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
제11조 ~ 제13조 (생략)	제12조 ~ 제14조 (제정안과 같음)
제14조(표창)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 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<u>청년 창</u> 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	제15조(표창)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 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<u>청년 창</u> 업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제15조 (생략)	제16조 (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의 범위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의4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,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청년창업 실태조사
2. 청년창업 경영 지원
3.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
4.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
5.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
6.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·단체 등에 관

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.

제5조(청년창업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(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)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,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,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)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자치구 및 창업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(투자 유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

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창업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
2.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
3. 제품 홍보·마케팅 지원
4.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
5.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
6.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
7.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4.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0조(창업지원센터 운영)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,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창업지원센터 입주)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요건, 모집방법, 선정인원, 선정기준, 선정방법, 입주절차, 입주자와의 계약,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홍보)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특례보증)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표창)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

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